현대그린푸드 협력사 행동규범

HYUNDAI
GREEN FOOD

서 문

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(이하 “현대그린푸드”라 함)는 협력사와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수립 후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,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여 상호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.

이에 현대그린푸드는 협력사 행동규범(이하 “본 규범”이라 함)을 제정하여 현대그린푸드의 모든 협력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,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현대그린푸드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본 규범은 기업 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 및 경영 시스템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, 현대그린푸드와 거래하는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모든 하위 협력사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현대그린푸드 또는 현대그린푸드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은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협력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. 만약 본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그린푸드와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 규범은 국제 규범 및 기준 등을 토대로 제정되었고, 현대그린푸드의 협력회사와 관련된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본 규범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규범은 현대그린푸드 홈페이지, 협력사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될 수 있습니다.

본 문

1. 기업 윤리

가. 투명경영 및 반부패

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뇌물수수, 공갈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상대방의 약점,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.

③ 협력사는 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.

나. 불공정거래방지

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시장 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협력사는 경쟁업체,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

다. 품질안전관리

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 되며, 위조되거나 불량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되거나 불량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이 사용되거나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, 그러한 상황을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 등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적합하게

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라. 신원 보호 및 보복금지

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보호해야 하며,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마. 정보 보호

① 협력사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,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고객사, 하위 협력사, 소비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조건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 · 제공해야 하며,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 등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상대방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협력사 스스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
2. 인권/노동

가. 차별금지

① 협력사는 채용과정, 승진, 보상,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과 같은 고용 관행 등에 있어서 성별, 국적, 인종, 민족, 종교, 결혼여부, 임신, 나이, 장애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.

② 협력사는 관련 법령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,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나.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

①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, 초과근로수당,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하는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,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,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다. 근로시간 준수

① 협력사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,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

라. 인도적 대우

① 협력사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성희롱,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내지 욕설을 포함한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하거나 징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,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방침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.

마. 결사의 자유 보장

①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,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,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단체교섭 시 근로자 대표자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근로자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교섭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바. 아동근로 금지 및 미성년 근로자 보호

① 협력사는 형태의 상관없이 아동 근로자('아동'은 ILO 핵심협약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만 15세 미만인 자, 최소한의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미만인 자, 법규에서 정한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함)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며, 신분증,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근로자 및 고용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아동이 아닌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,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을 도덕상 또는 안전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.

③ 협력사는 아동 근로와 관여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사. 강제노동 금지

① 협력사가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구속력 있는 노동 착취,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강요 등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근로를 강력히 금지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, 여권,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,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, 협박, 감금 등 신체적/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협력사는 신체적/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자행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.

3. 안전/보건

가. 산업안전 관리

①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며,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안전상 위험요소(예 : 화학물질, 화재, 감전, 추락 위험 등)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파악, 평가 및 통제해야 하며,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을 시행하고, 적절한 보호구

등을 제공하는 등 관리적 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.

나. 설비 관리

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·기구·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해당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.

다. 산업재해 및 질병의 예방

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을 예방하고, 이를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이상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하고, 산업 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여 기록해야 하며, 근로자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 또한,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고,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.

라. 보건 관리

①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휴게공간, 화장실,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,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고, 적절한 조명, 비상 탈출시설, 난방 및 환기시설, 개인물품 보관함,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.

마. 비상사태 대응

① 협력사는 자연재해, 집단감염,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사전 파악 후 평가하여,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또한,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, 대응,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

갖추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비상사태 관련 계획 및 매뉴얼 등을 갖출 때, 근로자 대상 대피 훈련, 탈출 시설,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
4. 환경

가. 환경경영시스템 구축

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있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(예 : 대기배출시설 등)를 취득·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, 계획, 절차, 성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
나. 지속 가능한 원재료 조달

① 협력사는 식품 및 기타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,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조달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여, 삼림과 수자원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.

다.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

①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라. 수자원 관리

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,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,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.

마. 대기오염물질 관리

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, 연무제, 부식성 가스, 미립 분말, 오존층 파괴물질,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, 나아가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
③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
바. 폐기물 관리

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,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,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.

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, 소각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사. 화학물질 관리

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, 보관, 사용,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,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조달, 생산, 판매,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5. 경영 시스템

가. 기업 성명서 공시

협력사는 본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의 승

인을 받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내·외에 전파해야 합니다.

나. 담당자 선임

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.

다. 리스크 관리

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고, 파악된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.

라. 교육 및 의사소통

①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들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 성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.

마. 정보 관리

① 협력사는 기업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산업 단체, 중요 고객사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 받는 경우,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바. 고충처리 제도 운영

① 협력사는 근로자가 기업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사실을 확인, 인지한 경우 또는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, 위협, 보복,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. 또한,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.

사. 거래업체(하위 협력사) 관리

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, 설계, 판매,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(하위협력사)에게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기업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관련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

② 협력사는 거래업체(하위협력사)가 기업윤리, 인권/노동, 안전/보건, 환경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, 거래업체(하위협력사)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